

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사업
출연 동의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7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새마을운동의 성공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인류공동 번영에 기여하고,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는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 이에 구미시에서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해외새마을시범마을조성사업에 동참하여 새마을운동 종주도시 구미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2018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새마을세계화재단의 해외새마을시범조성사업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- 대상기관 : 새마을세계화재단
- 대표이사 : 이 지 하
- 소재지 : 구미시 이계북로 7 (임수동, 경제진흥원)
- 출연예정액 : 150백만원 (5차년도 소요예산)

나. 주요 사업

○ 해외새마을시범마을조성사업 현황

- 대상마을 : 스리랑카 헤와디웰러 마을
- 사업기간 : 2014년 6월 ~ 2019년 5월 (5년)
- 사업비 : 총 750백만원 (연 150백만원)
- 참여기관 :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, 구미시, 코이카
- 사업내용
 -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 파견 및 해외시범마을조성
 - 새마을조직 육성 및 교육
 - 지역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
 - 생활환경개선
 - 소득증대사업 등
- 사업 추진실적
 - 새마을조직 육성 및 주민의식 교육(월1회 140명)
 - 새마을교육 및 인적역량강화교육 실시(월1회 140명)
 - 버섯협동조합센터 건립 및 주민체육시설 설치
(재배사, 배지작업장, 살균실, 배양실, 사무실, 조합원교육장 등)
 - 헤와디웰러 버섯협동조합원 구성(127명)
 - 주민 공동우물 설치(고성능 펌프 및 급수배관)
 - 현지 주민대상 물탱크 지원
 - 학교 환경개선사업(천장설치, 조명등, 선풍기 설치 등)

- 향후 추진계획

- 지역 거버넌스 확립 및 지도자 양성
-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경제자립 및 자기개발 교육
- 해와디웰러 버섯협동조합 정부 정식 인가
- 버섯 생산시스템 구축(생산설비 완비)
- 식수 및 생활용수 개선, 마을 도서관 건립 등

- 기대효과

- 새마을운동의 성공모델 확산을 통한 지구촌 빈곤퇴치에 기여
- 환경개선 및 의식 교육을 통하여 자립역량 강화에 기여
- 새마을운동 종주도시 구미의 글로벌 위상 제고
- 인근 마을 및 사바라가무와 전체로 시범마을 조성사업 확대

다. 출연의 필요성

-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확산 보급함으로써 지구촌 빈곤 퇴치 및 개발도상국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
- 새마을운동 종주도시로서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새마을운동을 세계에 보급하여 인류 공동번영의 보편적 인류애를 실천하는데 출연이 필요한 사업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 제3조
- 「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」 제8조

나. 예산조치 : 2018년도 예산편성(150백만원)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주요성과 및 사업 현황
- 도내 시·군 출연 현황
- 구미시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 추진 현황

주요성과(혜와디웰러) 및 사업 현황

<새마을운동 소개>

생활용수개선(우물설치)	주민 체육시설 설치
	

<새마을교육>

버섯협동조합원 교육1	버섯협동조합원 교육2
	

<소득증대 사업>

버섯협동조합센터 건립	센터 내부
	

【헤와디웰러 시범마을 현황】

- 위 치 : 사바라가무와주 람북카나시 헤와디웰러마을
- 인 구 : 1,340가구 3,225명
- 기 후 : 고온 다습한 열대몬순 기후(연평균 27℃)
- 언 어 : 싱할라어, 영어
- 교 통 : 콜롬보(수도) 85km거리 (자동차 3시간)
- 종 교 : 3개 부락은 천주교 및 개신교, 2개 부락은 불교
 - 종교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조화롭게 어울려 살고 있음
- 특이사항
 - 마을 농업위원회, 여성회, 상조회 등 다수 조직 활동
 - 스리랑카 최대의 바나나 생산 및 쌀 농사 지역, 밭작물 가능 농사에 적합한 기후
 - 양계·양돈 및 버섯 생산 가능하여 인근의 피티예가마 사업과 시너지 기대
 - 사바라가무와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성과 기대
 - 주민 단합과 화합이 잘되어 성공가능성 높음

도내 시·군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연번	시군명	지 원 대 상		출연 금액	사 업 내 용	출연년도
		지원국	도시명			
1	구 미 시	스리랑카	헤와디웰러	600	지역 거버넌스 구축 의식 및 환경개선 소득증대사업 교육	2014년
2	포 향 시	스리랑카	피티예가마	600	“	“
3	안 동 시	라오스	타드아싱흠	600	“	“
4	영 천 시	베 트 남	탄 랑	600	“	“
5	청 송 군	필리핀	과달루페	600	“	“
6	청 도 군	베트남	토	600	“	“
7	문 경 시	인도네시아	숨버르물요	450	“	2015년
8	김 천 시	인도네시아	만중왕이	300	“	2016년
9	영 주 시	캄보디아	참박	300	“	“
10	상 주 시	캄보디아	로카	300	“	“
11	경 산 시	라오스	돈방포	300	“	“
12	군 위 군	베트남	푸남1	300	“	“
13	봉 화 군	베트남	모다오	300	“	“
14	울 진 군	베트남	작포	300	“	“
15	의 성 군	베트남	르엉덤9	300	“	“
16	성 주 군	베트남	만귀로	300	“	“
17	영 덕 군	캄보디아	깜랭	300	“	“
18	칠 곡 군	에티오피아	아라토	300	“	“
19	고 령 군	라오스	막히아오	150	“	2017년

※ 경주시, 예천군, 영양군, 울릉군 제외

구미시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 추진 현황

(단위:백만원)

지원국	지원연도	사 업 내 용	지원액
	계		1,418
베 트 남	2001년~ 2009년	· 보건소 건립, 의료장비 및 의약품 지원 · 장애인 재활센터 기공식, 암소은행 지원 · 새마을여성합창단 협연 · 새마을문고건립 및 독서경진대회 지원	112
중 국	1994년	· 명선촌 새마을회관 건립, 도서 및 학용품 증정 (노인정, 사무실, 문고, 게이트장 2개) ※ 2010년 새마을회관 정비보수	20
	2007년~ 2008년	· 새마을운동 성공사례발표, 교육 (장사시) ※ 새마을중흥지 구미의 새마을운동 구미시장 특강	
	2011년	· 충칭대학교 특강 : 시장님	
동티모르	2004년~ 2005년	· 바우카우 부녀아동센터 지원협약서 체결 · 하반신 불구 환자 1명 치료, 특강	54
러 시 아	2006년	· 연해주 국제화사업 지원	10
콩 고	2008년~ 2009년	· 새마을주택건립 지원, 생필품 보내기, 교육	37
필 리 핀	2013년	· 사랑의 생필품 전달 (생필품 20피터 콘테이너, 176박스) · 벼농사사업 전개	10
몽 골	2005년~ 2015년	· 새마을도로 개통, 사랑의 생필품 전달 · 목욕탕 건립지원, 사막방지용 묘목구입 · 결혼예식장 건립지원 · 목초지 및 건조장 조성지원 · 쫄하라시 새마을회관 건립 ※새마을운동기본이해 특강: 구미시장(2008) ※몽골정부 외국인1호 민주화훈장 수상: 구미시장(2012)	256
네 팔	2009년~ 2012년	· 새마을연수원건립지원 및 현지인교육 · 염소은행제 · 비닐하우스농장 운영, 종묘사업 · 재활용품 수집소, 교육 ※2011년 구미시장 현장방문	65
스리랑카	2014년~ 2018년 (예 정)	· 해외새마을시범마을(과할라가마) 조성사업 · 1기 새마을리더해외봉사자 파견 7명 · 2기 새마을리더해외봉사자 파견 4명 · 3기 새마을리더해외봉사자 파견 3명 · 4기 새마을리더해외봉사자 파견 1명 · 생활환경 개선사업 : 화장실 개선사업 (20개소) · 학교생활환경 개선사업, 소득증대사업 등 · 자립의식 교육 및 한국어 교육 등 · 벼싯재배사 및 주민체육시설 건립 등	600
에티오피아	2010년 2016년	· 도서관 및 어린이집 건립 지원, 새마을교육 · 2016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 추진대상 - 영남대박정희새마을연구원 (사업비 2억)	254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5.28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<신설 2014.5.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4.5.28.>

□ 「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」

제3조(출연금의 지급 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개인·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(財源)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.

③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, 보조금, 기부금의
사용·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」

제8조(출연금 교부) 도지사·시장·군수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
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소관 실 · 과		새 마 을 과
입 안 자	과 장	박 수 원
	담 당	김 팔 근
	담 당 자	이 윤 정 (480-6802)